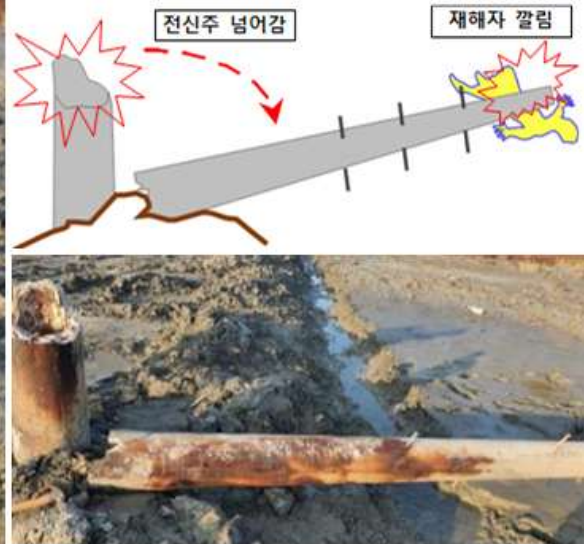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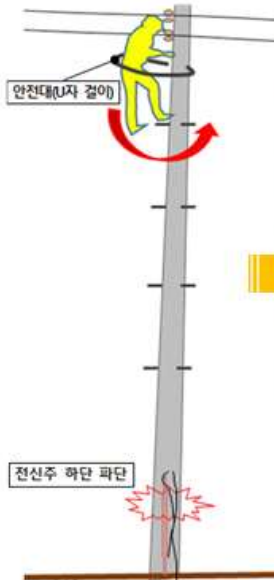




## 재해개요

- 2021. 11. 12.(금) 09:50경 전라남도 □□군 △△면 소재 ○○기전 소속 재해자가 염전 부지 내 노후화된 전신주 철거 전 선행 작업으로, 전신주 상단 피복선을 풀기 위해 자세를 잡던 중 전신주 하부가 파단되어 넘어지는 전신주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



## 재해발생 원인

- 전신주 철거작업 전 안전성 평가 미실시
  - 노후화된 전신주 철거작업 시 자중 및 그 밖의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파단 되어 전신주가 넘어짐 등의 위험이 있었으나, 사전 안전진단 등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음
- 중량물 취급작업 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미실시
  - 노후화된 전신주 철거작업 등과 같은 중량물을 취급할 때에는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전신주가 넘어짐 등의 위험에 대한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미작성



## 재해예방 대책

- 전신주 철거작업 전 안전성 평가 실시
  - 노후화된 전신주 철거작업 시 자중 및 전신주에 오르는 등 작업하중이 부가되어 전신주가 파단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을 경우 사전 안전진단 등 안전성평가 실시하여 위험성 제거 후 작업 실시
- 중량물 취급작업 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미실시
  - 노후화된 전신주 철거작업 등과 같은 중량물을 취급 시,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전신주 넘어짐 등 위험에 대한 안전대책\*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 실시
  - \* 이동식 크레인으로 지주를 지탱하고 넘어짐 방지를 위한 지지용 전주를 설치하여 안전성 확보 등

※ 본 사례는 공공기관 발주공사·직영·도급 등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배포하고 있습니다.